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해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644 발의연월일: 2025. 4. 8.

발 의 자:이해식・한민수・서영교

신정훈 · 김영호 · 김원이

염태영 • 박용갑 • 박상혁

서영석 · 민병덕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를 위하여 열람·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 (보호기간)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은 군사·외교·통일·대내외 경제정 책·무역거래 등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로 한정해 정해져야 함.

그러나 헌법을 위반해 탄핵이 결정된 대통령의 경우 탄핵의 사유와 관련된 불리한 증거를 감추는 수단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대통령이 탄핵에 의하여 궐위된 경우 탄핵의 사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

록 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의2).

법률 제 호
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대통령이 탄핵에 의하여 궐위된 경우 탄핵의 사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20조의2의 제목 중 "관리"를 "관리 및 공개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이 탄핵결정에 의하여 궐위된 경우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탄핵의 사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하여는 공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)	제17조(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)
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	①
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기	
록물(이하 "대통령지정기록물"	
이라 한다)에 대하여 열람·사	
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	
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	
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(이하	
"보호기간"이라 한다)을 따로	
정할 수 있다. <u><단서 신설></u>	<u>다만, 대통령이</u>
	탄핵에 의하여 궐위된 경우 탄
	핵의 사유와 관련된 내용이 포
	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
	그러하지 아니한다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20조의2(대통령 궐위 시 대통	제20조의2(대통령 궐위 시 대통
령기록물 <u>관리</u>) ①·② (생	령기록물 <u>관리 및 공개</u>) ①·
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
	령이 탄핵결정에 의하여 궐위
	된 경우 제17조에도 불구하고
	탄핵의 사유와 관련된 내용이

<u>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</u> <u>는 공개할 수 있다.</u>